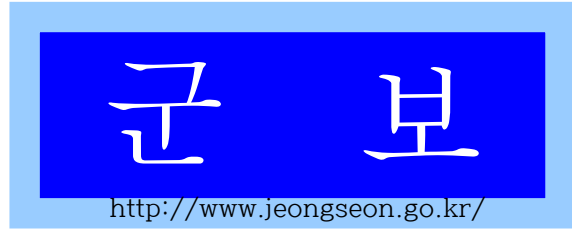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1호 2019. 2. 7. (목)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21호 정선군 택시 운임·요금 결정사항 고시.....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01호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6
- 정선군 공고 제2019-132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21호

정선군 택시 운임·요금 결정사항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선군 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정 선 군 수

○ 택시 운임 및 요율

구 분 (중형택시)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요금 (2km까지)		2,800원	현행과 같음	
할 증 요 금	심야할증률 (00:00 ~ 04:00)	미터요금의 20%	현행과 같음	
	시계외 할증률 (사업구역 외 운행)	미터요금의 70%	폐지	
	복합할증률	고시구역 63%	폐지	
	시간거리병산운임 (2km 이후)	-	152m당 200원 15km/h이하 40초당 200원	
호출사용료		호출 1회당 1,000원	폐지	

○ 적용일은 2019. 2. 1. 00:00부터 한다.

○ 단서조항 : 향후 강원도 택시요금 조정시 기본요금만 적용함
(거리운임 및 시간운임은 차기 요금 조정시 조정)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강화(안) 병행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강화(안)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친절서비스 준 수	1. 대 상 : 택시 2. 준수사항 가. 택시 “불친절 행위 ” 에 대한 정의 o. 불친절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 ·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다.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위반시 조치사항 가. 운송사업자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적용 o.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나. 운수종사자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적용 o.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내용 너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 1차 120만원 . 2차 240만원 . 3차이상 360만원 - 사업 일부정지 . 1차 20일 . 2차 40일 . 3차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 1회 10만원 . 2회 10만원 . 3회이상 10만원
카드결제기 장착 준수	1. 대상 : 택시 2. 준수사항 가.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카드단말기 위치는 승객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다. 카드단말기는 마그네틱카드, IC카드, 선 · 후불 교통카드 등 모두 사용가능한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후 운행개시 하여야 한다. 3. 위반시 조치사항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적용 나.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 1차 120만원 . 2차 240만원 . 3차이상 360만원 - 사업 일부정지 . 1차 20일 . 2차 40일 . 3차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승차거부 행 위 부당요금 징 수 일정장소 장시간정차	1. 대상 : 택시 2. 준수사항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준수의무를 가진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장시간 정차행위 : 1시간 이상 정차 ※ 일정한 장소 : 관내·외 불문, 택시승강장 내·외 불문 3. 위반시 조치사항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적용 나.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거목에 의한 과태료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위반내용 나항 4)호 각목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정지 및 5)호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	법 제26조	○ 운수종사자 - 과태료 . 1회 20만원 . 2회 20만원 . 3회이상 20만원 - 택시운전 자격정지 . 1차 10일 . 2차이상 20일 - 택시운전 자격취소 . 1년간 3차 이상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처분받은 자
사업구역 제한택시 구역 외 영업행위	1. 대상 : 지역제한 택시 2. 준수사항 가. 지역 제한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운수사업 택시는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정선군과 사전 협의 및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시 조치사항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85조제1항제6호 적용 나.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 제3호다항에 의한 과징금 또는 [별표3] 위반내용 제6호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법 제4조 제85조제1항	○ 운송사업자 - 과징금 . 1차 40만원 . 2차 80만원 . 3차이상 160만원 - 사업 일부정지 . 1차 5일 . 2차 10일 . 3차이상 20일
차고지 밖 교대금지	1. 대상 : 택시 2. 준수사항 가.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는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하며 부제운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여야 하며, 정선군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금지예외를 인정한다. 3. 위반시 조치사항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나.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 일부정지 또는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 1차 120만원 . 2차 240만원 . 3차이상 360만원 - 사업 일부정지 . 1차 20일 . 2차 40일 . 3차 60일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101호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5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52번지 일원

다. 면 적 : 158,683㎡ → 155,436㎡ (감 3,247㎡)

라. 주요변경내용 : 기반시설(도로, 주차장)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의 교통 환경 및 정주 환경개선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여량면사무소

나.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19. 1. 25. ~ 2019. 2. 10.)

4.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실음 생략

5.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실음 생략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여량면사무소로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여량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램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18. . .
공 램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램 의 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9-132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군 입영(복무)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을 통하여 국가 보상금 외 후유 보상의 현실화로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 입영(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제7조)
- 나. 위원회 위원 수 16명으로 늘림(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2019. 2. 1. ~ 2. 20.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 화 : 033-560-2253
- F A X : 033-560-2590
- E-mail : edu041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년의 의료보장 지원

가. 청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제11조제2항 위원회 구성원을 늘리고자 함.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8. (생 략) <u><신 설></u> 9. (생 략)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청년의 의료보장 지원</u> 가. <u>청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1조(청년정책위원회)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11조(청년정책위원회)②----- -----9명 이상 16명 이내의-- -----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